

2017년도 전국 물가감시 네트워크 회의

- ◎ 일 시 : 2017년 8월 30일(수) 10:30 ~ 17:00
- ◎ 장 소 : 통계교육원 제1강의실
- ◎ 공동주최 : 기획재정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7년도 전국 물가감시 네트워크 회의

- ◇ 일시 : 2017년 8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 ◇ 장소 : 통계교육원 제1강의실
- ◇ 공동주최 : 기획재정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 참석자 : 소비자단체 물가대책위원(또는 실무자)

- 순 서 -

시 간		내 용	발표자/사회자
10:30~10:40	10'	인사말씀	김연화 물가감시위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40~11:10	30'	강의1: 최근 물가동향과 대응방향	봉관수 팀장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11:10~11:20	10'	휴식	
11:20~12:30	50'	발표: 임대아파트 임대료 현황과 감시활동 (전주시 부영주택 임대료 인상을 중심으로)	김보금 소장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12:30~13:30	60'	점심식사	
13:30~14:30	60'	강의2: 2016년 공공요금 분석 (공공요금 현실화와 요금인상 부적절성을 중심으로)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4:30~15:30	60'	발표: 도시가스요금 현황 및 현실화 (경남사례 중심으로)	박영선 사무총장 (진주YWCA)
15:30~15:40	10'	휴식	
15:40~16:40	60'	조별토의: 지역물가 대책회의 발전방향	
16:40~17:00	20'	조별 발표 및 마무리 말씀	김연화 물가감시위원장

※ 모든 강의에는 질의응답 10분이 포함됨.

2017년도 전국 물가감시 네트워크 회의

□ 취지

- 소비자단체는 과도한 시장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지역의 물가감시운동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최근 물가동향과 공공요금 분석 등 물가 관련 교육과 최근 지역 물가감시운동의 실제 사례를 접함으로써 지역 물가대책위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의 물가운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회의 개요

- 일시 : 2017년 8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대전 통계교육원 제1강의실
- 공동주최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 참석자 : 소비자단체 소속 물가대책위원(또는 소비자단체 실무자)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발표자/사회자
10:40~10:50	10'	인사말씀	김연화 물가감시위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50~11:20	30'	강의1: 최근 물가동향과 대응방향	봉관수 팀장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11:20~11:30	10'	휴식	
11:30~12:30	60'	발표: 임대아파트 임대료 현황과 감시활동 (부영주택 임대료 인상 중심으로)	김보금 소장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12:30~13:30	60'	점심식사	
13:30~14:30	60'	강의2: 2016년 공공요금 분석 (공공요금 현실화와 요금인상 부적절성을 중심으로)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4:30~15:30	60'	발표: 도시가스요금 현황 및 현실화 (경남사례 중심으로)	박영선 사무총장 (진주YWCA)
15:30~15:40	10'	휴식	
15:40~16:40	60'	조별토의: 지역물가 대책회의 발전방향	
16:40~17:00	20'	조별 발표 및 마무리 말씀	김연화 물가감시위원장

※ 모든 강의에는 질의응답 10분이 포함됨.

[발표]

임대아파트 임대료 현황과 감시활동

(전주시 부영주택 임대료 인상을 중심으로)

김보금 소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공공아파트 임대료 (전주시를 중심으로)

김보금(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

임대료 횡포, 전국 첫 형사고발 (6월13일)

'임대료 횡포' 부영그룹 전주시, 전국 첫 형사고발

하가아파트 5%씩 꾸준히 올려
시 "인근 전세가 변동 고려 안해"
회사측 "적법한 임대조건" 반박

▶ 관련기사 5면
전주시가 부영그룹(이하 부영)을 경
찰에 고발했다.

전주시는 부영이 하가지구에 지은 임
대아파트 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한 것
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영을 형사
고발하고, 부영의 임대아파트가 있는 전
국 25개 지방자치단체와도 연대할 방침
이다. 임대료 인상을 문세삼아 지자체
가 건설업체를 형사고발한 것은 처음이
어서 전주시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
다. 전주시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해마다 일방적으
로 임대료 인상 횡포를 일삼고 있는 부영
에 대해 '임대주택법(개정 후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전자문서로 경찰에 접수했
다. 전주시는 부영이 하가부영 임대아파
트 임대료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
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
고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에서 꾸준히 인상했고, 이는 엄연한
임대주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1년간 전주시 아파트 전세
가격은 1.24% 올랐으며, LH(2년마다
4.9%) 전북개발공사(8.3%) 인근 민간
아파트(2%) 등 전주지역 공공·임대아
파트 인상률과 비교할 때 부영이 과도하
게 높다는 것이다.

부영은 지난 2014년 10월 하가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지은 뒤 2015년과 2016년
두차례 법의 상한인 5%씩 인상해 임주
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전주시는 부영측이 지난 1월과 4월 2
차례 임대조건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지
만 조정이 필요하며 인상률을 2.6%이
하로 권고하고, 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
았다.



13일 전주시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했
고 있는 전주 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 전경.

전주시 관계자는 "부영은 정부의 공공 내
자금(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대출 받
아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임대료를 상한
선으로 올리면서 기업이익 추구에만 급
급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해명 보도자료를

기초단체장 70여명 공동대응(7.3일)



전북일보

사회

2017. 7. 3

임대아파트 사는 서민들 주거 안정 보장 힘 합쳤다

민주당 기초단체장 70여명 공동대응키로
전주시(주)부영주택, 하자발생문제로 갈등
'대료인상 등 건설사 횡포 차단방안 촉구'

민주당 소속 원곡 지방자치
들이 임대료 부담인상을 주장
부영주택(이하 부영)과의 차
이른 전주시와 공동 대응에 나

여명의 시장·군수, 구청장
17일(수) 전주 '기초단체
'장 연태영(주)부영(이하 부영)
연립 회의에서 '임대아
리보에 관련 법 개정 촉

주 시 등 70여곳의 기
가파트에 거주하는
리보 보장받을 수
일방적인 임대료
는 있는 제도적 장
들의 주거안정
해에 강력 대응

협의회는 기업의 이익보다는 인차
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 횡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 마련
을 국회 등 정치권에 촉구하기로 했다.

주인 협의회는 임대료를 연 2.5%의
내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
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
구할 예정이다. 또 임대사업자가 부당
한 임대조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지자
체가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는 신

설조항 마련도 촉구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평생
범에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서민들
의 소원이지만 이마저도 허락하지 않

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임대료
격정에 잘못 이르고 불안에 떨어야 하

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와
관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시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임대아파트 임차인
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급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부영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원치된 주택도시기
금을 저리로 융자 받아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왔고, 국가정책의 혜택을 입고

30년의 노하우를 축적해온 기업이 지
만 이에 걸맞지 않게 각종 민원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 하가지역의 경우 수백 건이 넘
는 하자발생으로 논란이 지속됐고, 지

난해와 올해 연이어 5% 임대료를 인
상해 임차인들의 원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앞서, 전주시는 그동안 부영과 수차
례 만나 하자보수와 적정한 임대료 인

상을 요구했으며, 최근에는 임대료를
5% 상한선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 경

찰에 고발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권조사를 요청하고 불공정행위로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데 "부영은 관
의 하자처리에도
다. 아울러 국회
한 법률 개정
다"고 강조했다

연태영 원
이런 문제
다. 김현
돈이 아니
붙어면
정책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부영의 원
대로 상한선 인상으로 서민들이 울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임대아파트 서민
들이 웃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



▲ '(주)부영주택의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29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시
장과 김명지 시장, 소비자단체 및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가 부영에 대한 공정거래위 직권조
사 요청과 불공정행위 신고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김현표기자

전주시 하가 지구 부영아파트

- 1.규모:12층/19개 동 860세대(26평:545세대, 34평:315세대)
- 2.사업승인:2014.10.16.임대의무기간 10년
- 3.2014년 최초 임대보증금 92,000,000원
- 임대료 300,000원 매년 보증금과 임대료 5%인상
- 4.전주시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전국평균 인상률 연2.6%인상을 넘자, 부영 측에 조정권고하였으나 응하지 않음->경찰에 고발

공공임대주택인가? 민간임대주택인가?

- 1.부영은 665억원 을 년2% 저리로 지원받음
->부영 측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無理하게 인상률을 강제 압박한다며 항의.

2.2015년 8월 이전에 건설한 임대주택 중 민간이 건설하였어도 공공택지나 주택도시기금 등 공적 지원을 받았다면 공공주택임.

3.따라서 임대료 규제를 따라야 함.

임대료 인상금액 결정 과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주시와 부영의 다른 산출근거

구분	인상 폭	근거
전주시	2.6% 이내	주거비물가지수(1.9%),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1.24%)의 평균치 1.57%와 LH등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평균 인상률 2.6% 범위 내로 인상률 산정
부영	5%	인근 타사 아파트(분양) 및 전세가격 변동률 평균 5.3%를 감안 5%로 인상률 산정

- 아파트주민들 주장
- -부영 아파트 와 불과 110여 미터 떨어진 타 민간 임대아파트(영무 예 다음아파트)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2016년부터 매년 2%밖에 인상하지 않음.
- -유사한 민간 부영 임대아파트는 매년 5% 인상은 인근지역 임대료 인상 평균치 보다 높다고 주장함.

연도별 세대수 (면적)	2014년(최초)		2015년(1차분) 5% 인상		2016년(2차분) 5% 인상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보증금	임대료
545세대 (59.97㎡)	92,000	300	96,600 (증4,600)	315 (증15)	101,430 (증4,830)	331 (증16)
			163,800 (전세보증금)	0	171,990 (증8,189)	0
315세대 (84.98㎡)	125,000	400	131,250 (증6,250)	420 (증20)	137,813 (증6,563)	441 (증21)
			214,200 (전세보증금)	0	224,910 (증10,710)	0

□-84.98m²(25평형)의 경우 2차 인상에서 전세보증금으로 10,710,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월세 보증금 역시 6,000,000 이상의 부담을 져야한다. 법적 공방을 뒤로하고 연간 전세 보증금으로 1천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세입자의 상황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즉, 법적 최고 한도 5%로 계속 인상한다면 지금 당장 부담해야 할 임대료도 문제이지만, 다음 인상에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진행과정

- 1.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 (2017.6월29일)
- ->전주시,전주시의회,입주민대표.소비자단체
- 2.전북시민연대 성명서 발표(2017.6월29일)
- 3.전주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상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 4.공정위에 부당임대료 인상에 따른 불공정행위 조사 요청함(2017.7월4일)
- 5.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에 주민대표 분쟁조정 접수함(2017.7월 26일)

남아있는 쟁점

- 1.인상률의 산출근거가 되는 “인근지역”이라는 규정의 모호성이 이번 기회에 정리되어야 함.
- 2.국민의 당(정동영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 ->임대료 증액을 현행 ‘연 5% 범위’에서 ‘연 2년에 5%’로 제안했다.
- 3.김현미 국토부장관
 - ->민간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 신고제로 관련법 개정.

물가를 바라보는 소비자단체

- 1.아파트 임대료는 물가심의 사항이 아님
- 2.지역주민들이 직접 우리에게 문제제기를 처음에 시도하지 않음
 - ->소비자단체는 개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의 부당한 요금,비용 등의 문제는 특히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 필요함,
 -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개인의 소비자권리 보장 필요함.

- 3. 감사원의 도시가스 감사결과 전국 172억 부당 지급(2017.7.6)->전북지역은 17억
- ->미 투자비용을 다음 년도에 포함시키지 않음
- ->경남은 노회찬의원의 도청기자회견으로 시민 네트워크 결성함.
- 4.전북도 물가심의 강력한 항의로 1차 부결시킴
- ->소비자단체 함께하는 목소리와 연대 필요함
- ->2차 회의 시 감사원 내용보고와 2018년도
- 미 투자비용 정산함 받아들임.(2017년 동결함)

감사합니다



[강의2]

2016년 공공요금 분석

(공공요금 현실화와 요금인상 부채질생성을 중심으로)

정시래 회계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주요 지방 공공요금 분석

2017년 8월 3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CONTENTS

- I. 공공요금이란
- II. 주요 지방 공공요금 현황
- III. 공공요금 인상의 부적절성
- IV. 결론 및 제안

I. 공공요금이란



1. 개념

-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용자가격(user price)
* 출처 : 김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2009., pp.493~502
- 공공서비스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
* 출처 : 이상철, 권영주, 「공공요금의 규제와 한계에 관한 법적정책적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 **원가에 기초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익성, 형평성 등 정치적·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

2. 전제조건

- 국가의 경제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공공요금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 공공요금은 공평하여야 합니다.
- 공공요금은 공기업에게 충분한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 공공요금의 구조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해서 비교적 단순하여야 하고 편리하게 짜여 있어야 합니다.
-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 요인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 출처 : 공공요금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작성자 조세연 (2013)

3. 종류



요금결정주체		공공요금의 내용
중앙공공요금 (11종) - 중앙정부 관리·결정	산업통상자원부 (4종)	전기료, 도시가스(도매) , 우편료, 열요금
	국토교통부 (5종)	열차료, 시외버스료(고속버스료), 도로 통행료, 국제항공요금(인가노선), 상수도(광역, 댐용수)
	방송통신위원회 (2종)	통신료, 유료방송수신료
지방공공요금 (11종) - 지방자치단체 관리·결정	지자체 직접운영 (4종)	지하철료, 상수도료(소매),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민간운영 또는 지자체 승인 (7종)	도시가스료(소매), 시내버스료, 택시료 , 정화조 청소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 관람료, 고교납입금

* 출처 : 공공요금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작성자 조세연 (2013)

2017년 07월 전제시도 지방공공요금 평균요금

(최고가: ↑ 최저가: ↓) (요금단위: 원)

구분	전철료(성인)		시내버스료(성인)		택시료 (중형)	도시가스료(가정용, 취사)			상수도료 (가정용)	하수도료 (가정용)	쓰레기봉투료 (20ℓ)
	카드	현금	카드	현금		소비자 요금	도매 요금	소매 비용			
서울	1,250 ↓	1,350 ↓	1,200	1,300	3,000	8,343	7,713	631	8,280	6,600	486
부산	1,300 ↑	1,400 ↑	1,200	1,300	2,800 ↓	8,864	7,713	1,151	15,000 ↑	8,900	813 ↑
대구	1,250 ↑	1,400 ↑	1,250	1,400	2,800 ↓	8,477	7,713	764	12,060	8,400	560
인천	1,250 ↓	1,350 ↓	1,250	1,300	3,000	8,115 ↓	7,336	779	10,330	8,300	620
광주	1,250 ↑	1,400 ↑	1,250	1,400	2,800 ↓	8,232	7,714	578 ↓	11,600	6,000	740
대전	1,250 ↑	1,400 ↑	1,250	1,400	2,800 ↓	8,426	7,713	714	9,200	6,600	660
울산	-	-	1,250	1,300	2,800 ↓	8,630	7,713	977	13,400	9,200 ↑	600
경기	-	-	1,250	1,300	3,000	8,501	7,713	788	11,014	7,279	538
강원	-	-	1,106 ↓	1,222	2,800 ↓	9,480	7,564	1,916	11,787	4,417	384
충북	-	-	1,200	1,300	2,800 ↓	9,214	7,713	1,501	11,653	5,345	307 ↓
충남	-	-	1,277 ↑	1,333	2,813	8,362	7,709	653	13,242	4,920	380
전북	-	-	1,218	1,268	3,200	8,946	7,713	1,233	12,988	4,949	333
전남	-	-	1,212	1,402 ↑	3,305	8,783	7,252 ↓	1,530	11,760	3,989 ↓	315
경북	-	-	1,183	1,257	2,800 ↓	9,092	7,713	1,379	10,705	4,292	320
경남	-	-	1,164	1,261	3,406 ↑	9,152	7,713	1,439	12,845	4,713	493
제주	-	-	1,150	1,200 ↓	2,800 ↓	10,403 ↑	8,272 ↑	2,131 ↑	7,800 ↓	5,600	700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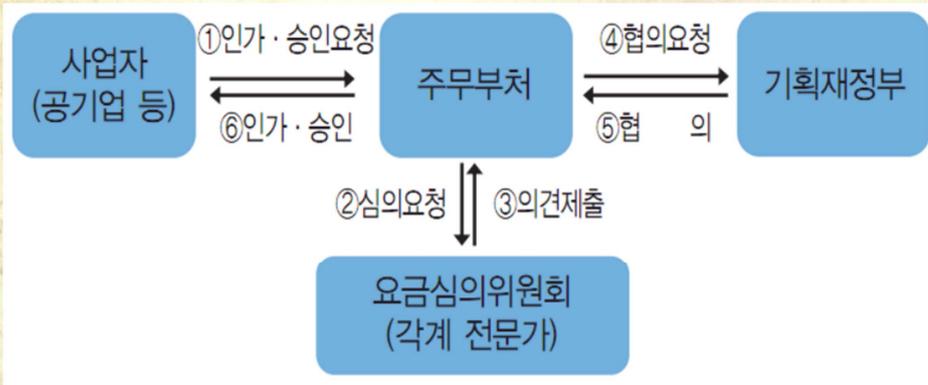
1. 전철료:성인(기본요금), 시내버스료:성인(기본요금) 군단위는 농어촌버스, 택시료:중형(기본요금)
2. 도시가스료는 가정용(취사) 1MJ 요금을 516MJ로 환산한 금액(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요금 미포함)
-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한 요금, 소매요금은 지자체가 결정한 요금
* LNG AIR가 공급되는 강원도 일부 시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1m³ 요금을 12m³로 환산한 요금 적용
* '12년 7월 이전요금은 1m³ 요금을 12m³로 환산한 요금
3. 상수도료:가정용 1m³요금을 20m³로 환산한 금액(구경별 13mm 정액요금 포함)
4. 하수도료:가정용 1m³요금을 20m³로 환산한 금액
5. 쓰레기봉투:20ℓ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 지방물가정보 > 가격정보 > 지방공공요금

4. 결정

□ 중앙공공요금

○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요금으로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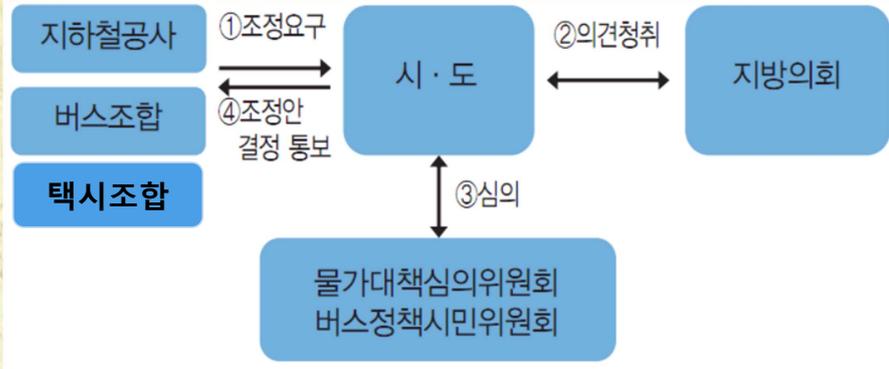


* 출처 : 한국은행 보고서

4. 결정

□ 지방공공요금 - 대중교통 요금(지하철, 버스, 택시)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안을 마련하면 지방의회의 의결과 관련 위원회 심의 후 결정



* 출처 : 한국은행 보고서

4. 결정

□ 지방공공요금 - 도시가스 요금

- 천연가스 등 원료비가 약 8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료비의 가격변동이 도시가스 요금에 즉각 반영되도록 원료비 연동제가 적용
- 매 홀수월에 한국가스공사가 재산정한 원료비가 기존에 산정된 수준에서 $\pm 3\%$ 이상 변동하게 되면 원료비를 조정



* 출처 : 한국은행 보고서

4. 결정

□ 지방공공요금 - 상수도요금

- 광역상수도 요금(도매가격,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무부처)
- 지방상수도 요금(소매가격, 각 지자체에서 결정)
- 부과방식 :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 및 가정용, 대중목욕탕용, 업무용, 영업용 등 4개 업종에 따른 누진체계의 사용요금을 합하여 부과함
- 요금현실화율(*)은 2014년도 기준으로 전국 평균 76% (출처 : 통계청)

* 요금현실화율 : 총괄원가 대비 부과금액

□ 지방공공요금 - 하수도요금

- 각 지자체에서 결지자체에서 조정안을 마련하면 지방의회의 의결과 관련 위원회 심의 후 결정됨
- 부과방식 : 가정용, 대중목욕탕용, 업무용, 영업용 4개 업종에서 누진체계의 사용요금 부과함
- 요금현실화율(*)은 2014년도 기준으로 전국 평균 39% (출처 : 통계청)

□ 지방공공요금 - 쓰레기봉투요금

-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됨
- 청소예산 주민부담률 :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된 비용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II. 주요 지방공공요금 현황

1. 7대 특별·광역시 주요 지방공공요금 추이

□ 전철요금

<지자체별 전철요금 추이>

(단위 : 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 01월	900	1,100	1,100	900	1,100	1,100	-
2012년 03월	1,050	1,100	1,100	1,050	1,100	1,100	-
2013년 11월	1,050	1,200	1,100	1,050	1,100	1,100	-
2014년 전체	1,050	1,200	1,100	1,050	1,100	1,100	-
2015년 07월	1,250	1,200	1,100	1,250	1,100	1,250	-
2016년 03월	1,250	1,200	1,100	1,250	1,100	1,250	-
<참고>							
2017년 07월	1,250	1,300	1,250	1,250	1,250	1,250	-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지방물가정보> 가격정보> 지방공공요금

조사대상기간 : 2012년 1월 ~ 2016년 3월

요금산정기준 : 성인기준 카드(기본요금)

울산 : 전철 미개통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지자체별 전철요금 인상률>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	16.67%	0.00%	0.00%	16.67%	0.00%	0.00%	-
2013년	0.00%	9.09%	0.00%	0.00%	0.00%	0.00%	-
2014년	0.00%	0.00%	0.00%	0.00%	0.00%	0.00%	-
2015년	19.05%	0.00%	0.00%	19.05%	0.00%	13.64%	-
연평균	8.93%	2.27%	0.00%	8.93%	0.00%	3.41%	-

□ 수송원가 산출과정 - 부산교통공사

☑ 고객 1인당 수송원가 산출과정

• 수송원가 산출식

수송원가=(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외비용 - 영업외수익(금융이익) ÷ 수송인원
 1,767원=(5,399억원 + 352억원) + 0 - 19억원 ÷ 3억 2,438만명

•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

인건비와 경비 등 도시철도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영업비용

- 직원 인건비
- 열차운행 및 108개역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 도시철도 전동차, 시설물 등의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 등
- 108개 역사 및 전동차의 청소용역 비용 등
- 기타 필수 소요 영업비용

• 영업외 비용

이자비용과 외화환손실

• 영업외 수익

이자수익

• 수송인원

1년간 수송인원

• 수송원가보전율 43.6% <2015년 결산기준>

(단위: 천명, 백만원 / 2015년)

총 수송원가(A)	수송 현황		1인당(원)		1인당(원) 부족액(D-E)	원가 보전율(E/D)
	인원(B)	수입금(C)	수송원가(D=A/B)	평균운임(E=C/B)		
573,233	324,382	250,112	1,767	771	996	43.6%

① 총 수송원가: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비)+영업외비용-영업외수익
 수송원가 보전을 위한 운임수준: 2,950원 <2015년 기준>

출처: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이용안내>운임정보>수송원가 및 운임결정

무임승차, 청소년요금(80%), 어린이요금(50%) 포함

□ 버스요금

<지자체별 버스요금 추이>

(단위: 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 01월	900	1,080	1,100	1,000	1,100	1,100	1,100
2012년 03월	1,050	1,080	1,100	1,000	1,100	1,100	1,100
2012년 07월	1,050	1,080	1,100	1,100	1,100	1,100	1,100
2013년 11월	1,050	1,200	1,100	1,100	1,100	1,100	1,100
2014년 03월	1,050	1,200	1,100	1,100	1,100	1,100	1,140
2015년 07월	1,200	1,200	1,100	1,250	1,100	1,250	1,140
2015년 12월	1,200	1,200	1,100	1,250	1,100	1,250	1,250
2016년 03월	1,200	1,200	1,100	1,250	1,100	1,250	1,250
<참고>							
2017년 07월	1,200	1,200	1,250	1,250	1,250	1,250	1,250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지방물가정보>가격정보>지방공공요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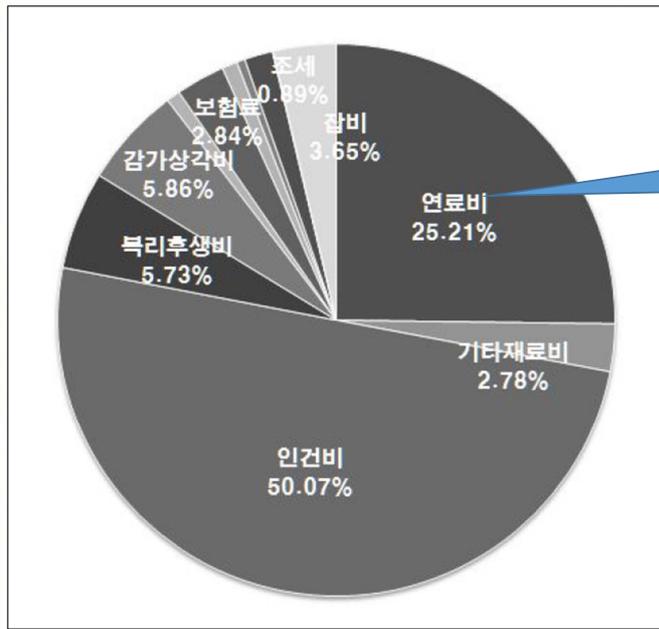
조사대상기간: 2012년 1월 ~ 2016년 3월

요금산정기준: 성인기준 카드(기본요금)

<지자체별 버스요금 인상률>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	16.67%	0.00%	0.00%	10.00%	0.00%	0.00%	0.00%
2013년	0.00%	11.11%	0.00%	0.00%	0.00%	0.00%	0.00%
2014년	0.00%	0.00%	0.00%	0.00%	0.00%	0.00%	3.64%
2015년	14.29%	0.00%	0.00%	13.64%	0.00%	13.64%	9.65%
연평균	7.74%	2.78%	0.00%	5.91%	0.00%	3.41%	3.32%

□ 시내버스 영업비용 항목 별 구성비 (2011년)



액화천연가스(LNG)
(도시가스의 주원료)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_여객운송산업 동향분석_최종보고서_2013.03.

□ 택시요금

<지자체별 택시요금 추이>

(단위: 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 01월	2,400	2,200	2,200	2,350	2,200	2,300	2,200
2013년 01월	2,400	2,800	2,800	2,350	2,200	2,800	2,800
2013년 04월	2,400	2,800	2,800	2,350	2,800	2,800	2,800
2013년 10월	3,000	2,800	2,800	2,350	2,800	2,800	2,800
2013년 12월	3,000	2,800	2,800	2,890	2,800	2,800	2,800
2014년 전체	3,000	2,800	2,800	2,890	2,800	2,800	2,800
2015년 전체	3,000	2,800	2,800	2,890	2,800	2,800	2,800
2016년 03월	3,000	2,800	2,800	2,890	2,800	2,800	2,800
<참고>							
2017년 07월	3,000	2,800	2,800	3,000	2,800	2,800	2,800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지방물가정보> 가격정보> 지방공공요금

조사대상기간 : 2012년 1월 ~ 2016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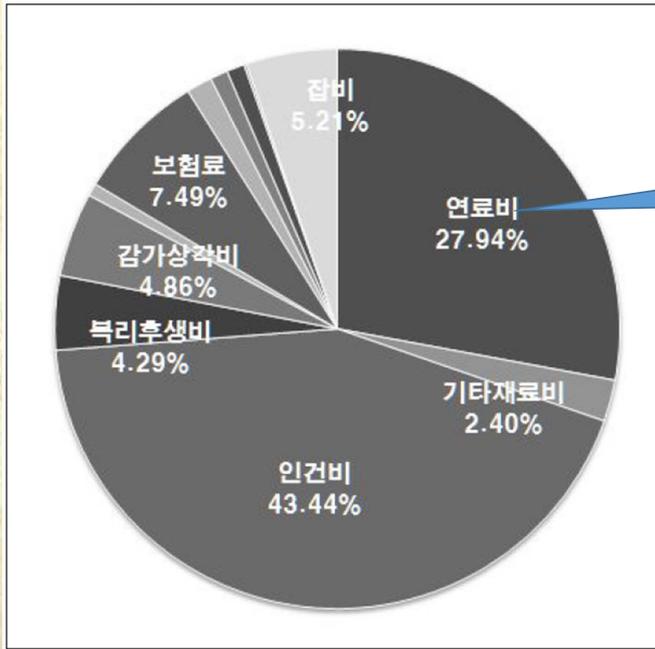
요금산정기준 : 기본요금

인천 : 강화지역 기본요금과 합산평균한 금액

<지자체별 택시요금 인상률>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13년	25.00%	27.27%	27.27%	22.98%	27.27%	21.74%	27.27%
2014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15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연평균	6.25%	6.82%	6.82%	5.74%	6.82%	5.43%	6.82%

□ 법인택시 영업비용 항목 별 구성비 (2011년)



액화석유가스(LPG)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_여객운송산업_동향분석_최종보고서_2013.03.

□ 도시가스요금

<지자체별 도시가스요금 추이>

(단위 : 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 1Q	9,922	9,948	10,031	10,087	10,252	10,058	10,194
2012년 4Q	10,294	10,319	10,427	10,457	10,379	10,476	10,563
2013년 평균	10,691	10,736	10,846	10,825	10,795	10,883	10,830
2014년 평균	11,514	11,999	11,605	11,624	11,104	11,347	11,479
2015년 평균	10,476	9,517	9,914	10,858	9,566	10,149	9,562
2016년 반기	7,987	7,919	8,163	8,725	7,953	9,129	8,099
<참고>							
2017년 07월	8,343	8,864	8,477	8,115	8,292	8,426	8,690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지방물가정보> 가격정보> 지방공공요금

조사대상기간 : 2012년 1월 ~ 2016년 6월

요금산정기준 : 소비자요금 기준으로 가정용(취사) 1MJ 요금을 516MJ로 환산한 금액(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요금 미포함)

<지자체별 도시가스요금 인상률>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	3.75%	3.73%	3.95%	3.67%	1.24%	4.16%	3.62%
2013년	5.77%	5.94%	6.03%	5.39%	4.65%	5.99%	4.35%
2014년	7.69%	11.77%	7.00%	7.38%	2.86%	4.26%	6.00%
2015년	-9.01%	-20.69%	-14.58%	-6.59%	-13.85%	-10.55%	-16.70%
2016년 반기	-23.76%	-16.79%	-17.66%	-19.64%	-16.86%	-10.05%	-15.30%
연평균	-3.11%	-4.94%	-4.80%	-3.37%	-5.80%	-2.59%	-5.41%

□ 도시가스요금

- 한국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LNG운반선을 통해 대부분 전량 수입
- 서울도시가스를 포함한 도시가스 회사는 일반 수요자에게 배관을 통해 공급
- 서울도시가스의 판매점유율은 수도권지역 18.1%, 전국기준 8.7%임
- 2015년 대비 2016년 판매비 중 퇴직급여가 약 97억원 증가함

<서울도시가스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매출액	1,265,360	1,533,173	1,826,774	1,885,866	1,885,154
매출원가	1,104,343	1,377,235	1,662,259	1,726,562	1,724,893
매출총이익	161,017	155,938	164,514	159,304	160,261
판매비와관리비	166,947	157,056	160,883	148,223	144,470
영업이익(손실)	-5,930	-1,117	3,632	11,081	15,792
금융수익	44,770	45,222	47,363	61,984	49,628
금융원가	1,671	1,674	2,257	2,226	1,772
기타이익	17,198	24,933	29,824	22,895	18,412
기타손실	8,554	8,425	11,636	20,889	6,751
법인세비용	11,235	11,341	13,940	14,328	15,666
당기순이익	34,577	47,597	52,984	58,517	59,643
매출원가율	87%	90%	91%	92%	91%
매출총이익율	13%	10%	9%	8%	9%

출처: 서울도시가스 사업보고서(2016년)

□ 상수도요금

<지자체별 상수도요금 추이>

(단위: 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 1Q	7,747	10,600	9,837	9,990	8,450	8,860	13,353
2012년 4Q	8,280	12,500	10,170	9,990	8,450	8,860	14,100
2013년 평균	8,280	12,500	10,170	10,323	8,783	8,860	14,225
2014년 평균	8,280	12,500	10,170	10,390	9,250	8,860	14,250
2015년 평균	8,280	12,600	10,912	10,390	9,567	8,860	14,250
2016년 반기	8,280	13,717	12,060	10,390	10,867	8,730	13,825
<참고>							
2017년 07월	8,280	15,000	12,060	10,390	11,600	9,200	13,400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지방물가정보> 가격정보> 지방공공요금

조사대상기간: 2012년 1월 ~ 2016년 6월

요금산정기준: 가정용 1㎡요금을 20㎡로 환산한 금액(구경별 13mm 정액요금 포함)

<지자체별 상수도요금 인상률>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	6.88%	17.92%	3.39%	0.00%	0.00%	0.00%	5.59%
2013년	3.33%	8.23%	1.66%	3.34%	3.94%	0.00%	3.63%
2014년	0.00%	0.00%	0.00%	0.65%	5.31%	0.00%	0.18%
2015년	0.00%	0.80%	7.29%	0.00%	3.42%	0.00%	0.00%
2016년 반기	0.00%	8.86%	10.52%	0.00%	13.59%	-1.47%	-2.98%
연평균	2.04%	4.47%	4.87%	1.00%	6.57%	-0.37%	0.21%

□ 상수도요금

○ 지역별 상수도요금의 차이원인

-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공급받는지의 여부
- 취수원 개발의 용이성
- 취수원과 물 공급지역과의 거리
- 수도물 생산시설의 규모, 정수처리비용, 수도사업 경영능력 및 재정상태 등의 차이에서 기인함.

(출처: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상수도요금 인상원인

-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 '요금현실화율'을 반영
- 요금현실화율을 정부가 제시한 권고안에 맞추고자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요금인상에 나서고 있음.
- (참고) 상수도요금현실화율 정부권고안은 **전국 평균 91.6%**임.

□ 상수도요금 - 요금현실화율(평균단가/총괄원가)

<지자체별 단위당 평균단가(*) 추이>

(단위: 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	564.6	689.5	580.1	642.0	525.0	513.4	875.2
2013년	574.2	715.1	579.0	663.7	531.3	509.4	872.0
2014년	571.0	713.1	578.6	669.1	555.0	513.6	868.6
2015년	572.5	718.2	641.4	673.5	570.5	525.5	865.8

* 단위당 평균단가 : 급수수익/ 연간조정량(㎥)

<지자체별 단위당 총괄원가 추이>

(단위: 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	630.7	849.3	581.2	677.1	615.3	563.7	832.7
2013년	618.6	880.6	598.3	693.8	624.6	578.4	870.9
2014년	639.3	941.1	657.4	669.1	636.8	587.0	901.0
2015년	639.0	908.0	683.0	656.8	634.0	539.0	857.0

* 단위당 총괄원가 : 총괄원가/ 연간조정량(㎥)

<지자체별 요금현실화율 추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	89.52%	81.19%	99.82%	94.82%	85.32%	91.09%	105.10%
2013년	92.83%	81.20%	96.76%	95.67%	85.08%	88.07%	100.12%
2014년	89.31%	75.77%	88.01%	100.00%	87.16%	87.50%	96.40%
2015년	89.60%	79.10%	93.92%	102.54%	89.98%	97.50%	101.02%
연평균	90.31%	79.32%	94.63%	98.26%	86.89%	91.04%	100.66%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책> 환경정책> 상하수도> 상수도통계

□ 상수도요금 - 총괄원가

<지자체별 총괄원가 구성항목(2016년)>

(단위 : 천원)

구분	서울		부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영업비용	700,959,770	90.3%	281,800,098	89.9%
자본비용	109,719,799	14.1%	35,381,952	11.3%
영업외비용	7,691,547	1.0%	4,308,747	1.4%
기타영업수익	-94,919	0.0%	-936,147	-0.3%
영업외수익	-42,374,721	-5.5%	-7,182,322	-2.3%
총괄원가	775,901,476		313,372,327	
연간조정량(m ³)	1,112,813,556		369,869,125	
단위당 원가(원/m ³)	697		847	

□ 세부구성항목

영업비용 : 인력운영비 등

자본비용 : 타인자본비용(이자비용) + 자기자본보수(요금기저*자기자본비율*적정투자보수율(4.6%))

영업외비용 : 유형자산제각손실 등(이자비용 제외)

기타영업수익 : 각종수수료수입 등(급수공사수익 제외)

영업외수익 : 이자수익, 타회계부담금수익(하수도요금 위탁징수수수료 등), 기타영업외수익

출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업본부> 경영정보> 회계결산> 총괄원가계산서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경영정보> 회계결산> 총괄원가계산서

□ 상수도요금 - 총괄원가

<총괄원가계산서 영업비용 구성항목(2016년)>

(단위 : 천원)

구분	서울		부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인력운영비	141,312,444	20.2%	66,581,606	23.6%
일반운영비	30,536,434	4.4%	5,661,808	2.0%
동력비	54,817,029	7.8%	30,045,851	10.7%
약품비	11,741,147	1.7%	2,955,041	1.0%
원·정수구입비	62,084,560	8.9%	18,298,300	6.5%
수선교체비	122,145,590	17.4%	45,164,599	16.0%
민간위탁비	1,382,727	0.2%	5,222,853	1.9%
연구개발비	-	0.0%	1,421,371	0.5%
경상이전	41,981,122	6.0%	17,447,776	6.2%
감가상각비	229,721,030	32.8%	76,288,395	27.1%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1,157,875	0.2%	1,831,268	0.6%
기타영업비용	4,079,812	0.6%	10,881,231	3.9%
합계	700,959,770		281,800,098	

출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업본부> 경영정보> 회계결산> 총괄원가계산서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경영정보> 회계결산> 총괄원가계산서

□ 하수도요금

<지자체별 하수도요금 추이>

(단위: 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 1Q	3,600	6,100	4,800	4,900	4,200	4,733	6,463
2012년 4Q	4,400	7,100	5,000	4,900	4,200	5,100	6,736
2013년 평균	5,067	7,100	5,400	4,900	4,450	5,100	6,800
2014년 평균	5,867	7,433	6,000	5,892	4,800	5,100	6,800
2015년 평균	6,000	7,867	6,800	6,200	5,067	5,100	7,600
2016년 반기	6,000	8,234	7,200	6,384	5,534	5,600	8,134
<참고>							
2017년 07월	6,600	8,900	8,400	8,300	6,000	6,600	9,200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지방물가정보> 가격정보> 지방공공요금

조사대상기간: 2012년 1월 ~ 2016년 6월

요금산정기준: 가정용 1㎡요금을 20㎡로 환산한 금액

<지자체별 하수도요금 인상률>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	22.22%	16.39%	4.17%	0.00%	0.00%	7.75%	4.22%
2013년	26.67%	7.58%	10.20%	0.00%	5.95%	3.73%	3.04%
2014년	15.79%	4.69%	11.11%	20.23%	7.87%	0.00%	0.00%
2015년	2.27%	5.83%	13.33%	5.24%	5.56%	0.00%	11.76%
2016년 반기	0.00%	4.66%	5.88%	2.96%	9.21%	9.80%	7.02%
연평균	13.39%	5.69%	10.13%	7.11%	7.15%	3.38%	5.46%

□ 하수도요금

○ 하수도요금 인상원인

-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 '요금현실화율'을 반영
- 요금현실화율을 정부가 제시한 권고안에 맞추고자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요금인상에 나서고 있음.
- (참고) 하수도요금현실화율 정부권고안은 전국 평균 68.2%임.

□ 하수도요금 - 요금현실화율(평균단가/총괄원가)

<지자체별 단위당 평균단가(*) 추이>

(단위: 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	369.6	474.7	327.9	394.1	340.8	379.4	379.6
2013년	445.8	490.8	385.9	416.9	351.3	384.9	400.0
2014년	516.4	514.8	373.7	479.2	370.9	389.9	401.8
2015년	519.0	459.9	442.1	482.5	389.8	387.2	450.6

* 단위당 평균단가: 급수수익/ 연간조정량(㎥)

<지자체별 단위당 총괄원가 추이>

(단위: 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	706.5	577.1	494.0	542.3	486.0	459.0	568.7
2013년	727.3	768.1	651.2	543.5	572.6	520.5	609.5
2014년	760.7	839.8	602.2	583.8	628.3	564.0	674.5
2015년	775.1	661.9	601.3	585.8	645.6	616.9	716.6

* 단위당 총괄원가: 총괄원가/ 연간조정량(㎥)

<지자체별 요금현실화율 추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	52.31%	82.27%	66.39%	72.67%	70.12%	82.66%	66.75%
2013년	61.30%	63.90%	59.26%	76.71%	61.36%	73.96%	65.63%
2014년	67.88%	61.30%	62.05%	82.08%	59.03%	69.14%	59.57%
2015년	66.96%	69.49%	73.53%	82.37%	60.37%	62.77%	62.88%
연평균	62.11%	69.24%	65.31%	78.46%	62.72%	72.13%	63.71%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책> 환경정책> 상하수도> 하수도통계

□ 쓰레기봉투요금

<지자체별 쓰레기봉투요금 추이>

(단위: 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 1Q	363	813	430	581	740	660	560
2012년 4Q	363	813	430	581	740	660	560
2013년 평균	364	813	430	581	740	660	560
2014년 평균	365	813	430	581	740	660	560
2015년 평균	393	813	430	581	740	660	573
2016년 반기	435	813	560	601	740	660	600
<참고>							
2017년 07월	486	813	560	620	740	660	600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지방물가정보> 가격정보> 지방공공요금

조사대상기간: 2012년 1월 ~ 2016년 6월

요금산정기준: 20리터봉투

<지자체별 쓰레기봉투요금 인상률>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13년	0.21%	0.00%	0.00%	0.00%	0.00%	0.00%	0.00%
2014년	0.34%	0.00%	0.00%	0.00%	0.00%	0.00%	0.00%
2015년	7.67%	0.00%	0.00%	0.00%	0.00%	0.00%	2.37%
2016년 반기	10.69%	0.00%	30.23%	3.36%	0.00%	0.00%	4.67%
연평균	3.78%	0.00%	7.56%	0.84%	0.00%	0.00%	1.76%

□ 쓰레기봉투요금

○ 지역별 쓰레기봉투요금의 차이원인

- 종량제봉투 가격 결정의 권한이 각 자치단체에 있고
-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의 여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함

○ 쓰레기봉투요금의 인상원인

- 종량제 봉투요금이 장기간 동결되어 왔고
- 최근 환경부의 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율을 높이라는 지침에 따라 지자체들이 요금인상에 나서고 있음

○ 청소예산 주민부담률

- 수집운반처리비총계 대비 종량제봉투판매수입

<수집운반처리비총계 구성항목 (2015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전국기준	
	금액	비율
수집운반비용(직영/위탁)	1,373,940	56.4%
처리비용(위탁/자체)	967,901	39.8%
종량제봉투제작비용	92,360	3.8%
합계	2,434,201	

□ 쓰레기봉투요금 - 청소예산 주민부담률

<지자체별 종량제봉투판매수입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	94,199	36,993	14,628	23,385	14,580	16,212	12,715
2013년	102,341	46,319	15,393	25,861	14,759	17,517	16,146
2014년	121,760	35,968	15,307	31,789	17,434	18,200	17,728
2015년	158,690	48,329	27,611	36,933	25,638	28,044	17,863

<지자체별 수집운반처리비총계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	235,901	91,186	39,334	68,069	50,736	42,628	23,428
2013년	262,497	94,834	40,925	78,033	42,081	48,064	28,680
2014년	262,157	103,720	60,254	87,691	43,861	52,282	30,571
2015년	332,523	97,778	88,558	87,465	59,888	64,890	33,836

<지자체별 주민부담률 추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	39.9%	40.6%	37.2%	34.4%	28.7%	38.0%	54.3%
2013년	39.0%	48.8%	37.6%	33.1%	35.1%	36.4%	56.3%
2014년	46.4%	34.7%	25.4%	36.3%	39.7%	34.8%	58.0%
2015년	47.7%	49.4%	31.2%	42.2%	42.8%	43.2%	52.8%
연평균	43.3%	43.4%	32.8%	36.5%	36.6%	38.1%	55.3%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통계포털

2. 주요 지방공공요금 연평균 상승률

구분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2012년	10.53	10.53	0.00	5.23	6.88	29.63	0.00
2013년	0.00	0.00	25.00	9.86	0.00	17.14	0.55
2014년	0.00	0.00	0.00	-5.29	0.00	9.76	0.82
2015년	19.05	14.29	0.00	-23.09	0.00	0.00	18.21
연평균	7.39	6.20	6.25	-3.32	1.72	14.13	4.89

주: 서울지역 기준이며 전철과 시내버스는 성인 카드요금 기준임.

- 공공요금의 지역별 편차가 커 대표적으로 서울지역의 요금을 기준으로 최근 4년간 공공요금 연평균 상승률을 비교함. 전철요금은 7.39%, 시내버스요금은 6.2%, 택시요금은 6.25% 인상됨. 도시가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3.32% 인하됨. 상수도요금은 1.72%, 하수도요금은 14.13% 인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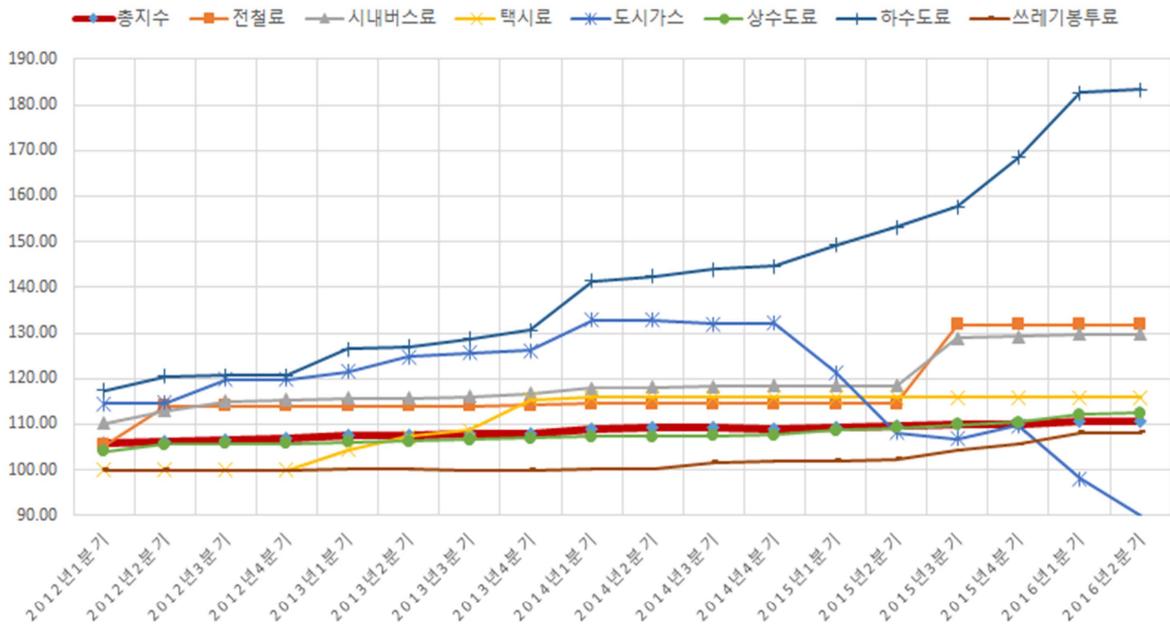
3.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공공요금 소비자물가지수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변동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총지수	106	106	106	107	108	107	108	108	109	109	109	109	109	110	110	110	110	111	111	4.7% 상승
전철	105	114	114	114	114	114	114	114	115	115	115	115	115	115	132	132	132	132	132	25.7% 상승
시내버스	110	113	115	115	116	116	116	117	118	118	118	118	118	118	129	129	130	130	130	18.2% 상승
택시료	100	100	100	100	104	107	109	115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6.0% 상승
도시가스	115	115	120	120	122	125	126	126	133	133	132	132	121	108	107	110	98	90	89	22.6% 하락
상수도	104	106	106	106	106	106	107	107	107	107	108	108	109	109	110	110	112	112	113	8.7% 상승
하수도	117	121	121	121	126	127	129	131	141	142	144	145	149	153	158	168	183	183	184	57.3% 상승
쓰레기봉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2	102	102	102	104	106	108	108	109	9.0% 상승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전국평균)



Ⅲ. 공공요금 인상의 부적절성

1. 국제 천연가스 가격추이



- 천연가스는 도시가스의 주요 원료이며 시내버스의 연료
- 도시가스요금은 광주가 최대 26% 하락
- 시내버스요금은 인천이 25% 인상

(단위: kg/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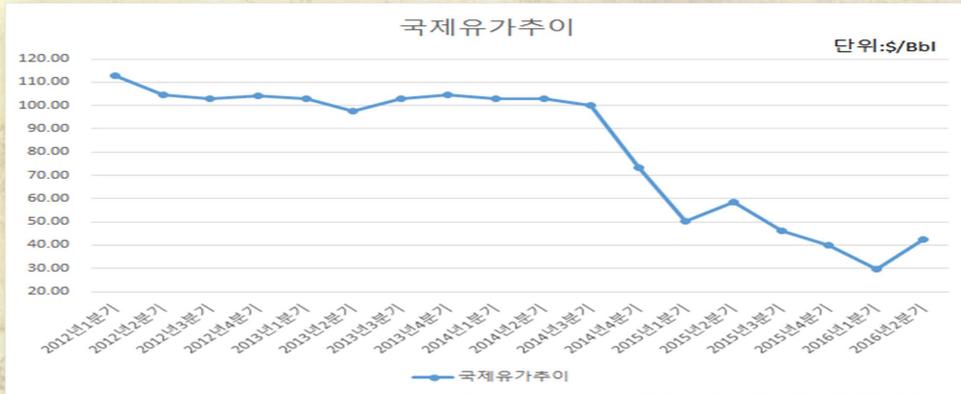
분기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가격	807	953	906	768	848	854	859	804	903	885	874	908	778	575	562	560	480	368

<천연가스가격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가격	858.72	841.27	892.61	618.67
연간인상률(%)		-2.03%	6.10%	-30.69%

최대 61.3% 하락

2. 국제 원유 가격추이



(단위: \$/Bbl)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년	
분기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가격	113	105	103	104	103	98	103	105	103	103	100	73	50	59	46	40	30	43

최대
73.4% 하락

○ 2012년 이후 국제유가는 2012년 1분기 \$112.74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이어옴. 2016년 2분기 국제유가는 배럴당 \$42.56로 2012년 2분기 대비 59% 하락함.

3.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 공공요금 인상의 주요 명분인 요금현실화는 요금인상 뿐만 아니라 원가절감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음.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요공공기관들의 경영행태에서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 노력을 찾기 힘들고 오히려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가스공사

-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부적정 사례」 (2014년)
- 「직원 및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부적정 사례」 (2014년)
- 「선택적복지비 이중지급 부적정 사례」 (2014년)
- 「내부 투자 판단기준 및 절차 미비 또는 미준수 사례」 (2015년)
- 「LNG수송선 하역 생산기지 배정업무 부당 처리 사례」 (2015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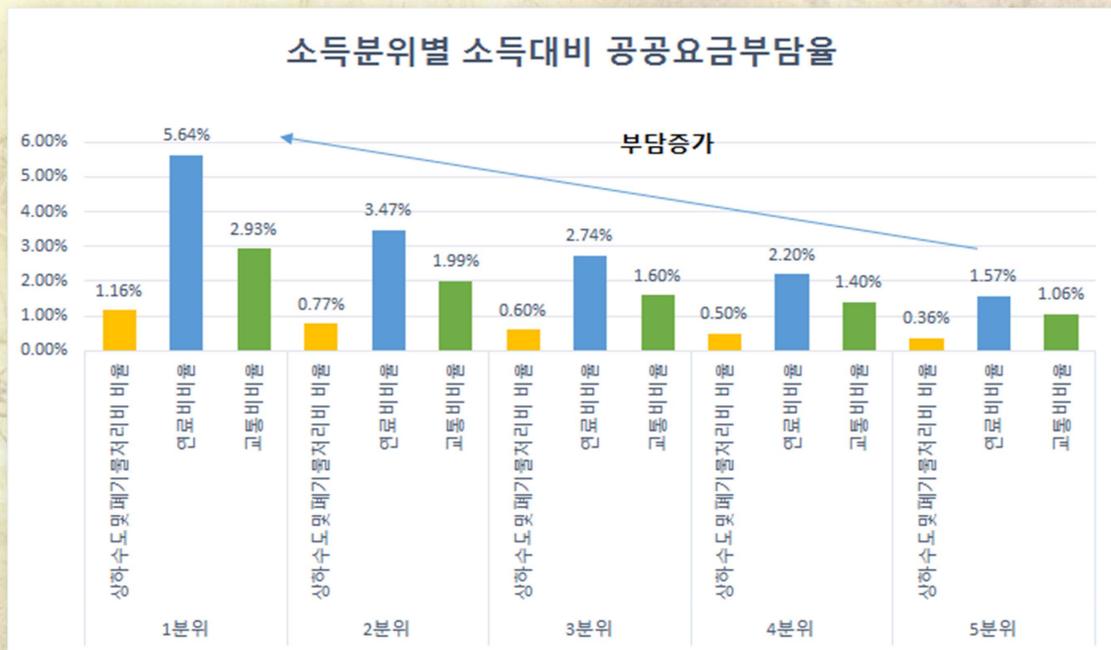
○ 한국수자원공사

- 「출자회사 사장 경영평가 및 성과연봉 지급 절차 부적정」 (2014년)
- 「국내여비(철도운임) 지급 부적정」 (2014년)
- 「위촉연구원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편성 부적정」 (2014년)
- 「퇴직직원 모임 등에 협력비 예산지원 부적정」 (2015년)
- 「토지보상금 공탁업무 부당 처리 사례」 (2015년)
- 「하도급 관리 부적정」 (2015년)
- 「경쟁입찰대상 물품을 수의계약 체결」 (2015년) 등

3.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 2015년 서울시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에서는
 -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 「폐차매각대금, 휴차료의 수입금 누락 부적정」
 - 「버스준공영제 참여 업체에 대한 적정이윤 산정 부적정」
 -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 정산 부적정」 등
-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경영합리화를 달성해야 하며, 경영의 방만함을 없애려는 다각도의 노력 후에도 인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고려해야 함.

4. 소득분위별 경상소득 대비 공공요금 비중 (2015년)



- 공공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기초적·필수적 성격이 강함
- 소득과 무관하게 부담하게 되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서민) 부담이 커지게 됨.

IV. 결론 및 제안



□ 경영합리화를 통한 요금현실화를 추진하여 요금인상 최소화해야

- 최근 5년간 공공요금인상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서비스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필수서비스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 시 그 부담은 다른 서비스에 비하여 클 수밖에 없음.
- 또한 공공요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대비 요금부담이 높아지는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인상을 최소화해야 함.
- 공공요금현실화는 요금인상으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 이를 수 있으나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보면 경영의 효율화를 찾아보기 어려움.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고 요금인상을 최소화해야 함.
- 7대 특별·광역시외의 공공요금비교 결과 지역별 요금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편차가 클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공공요금 인상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논의를 통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야 함.

[발표]

도시가스요금 현황 및 현실화

(경남지역 사례 중심으로)

박영선 사무총장
(진주YWCA)

경남지역의 도시가스 요금 현황

1. 도시가스 공급비용

1)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14.5697원/MJ

= 가스공사 원료비(약 83.5%) 산업통상자원부 승인(12.1698원/MJ)
 + 공급비용(약 15.7%) 도지사 승인(2.2851원/MJ)
 + 배관투자 채원(약 0.8%) 도지사 승인(0.1148원/MJ)

- ▶ 산자부 장관 승인: 가스공사의 원료비
 원료비: 원재료비, 수송, 저장, 출하비용 → 격월 승인
- ▶ 도지사 승인: 도시 가스회사의 공급비용
 공급비용: 도시 가스회사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투자,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 → 연1회 승인

2.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

1) 조정근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2) 대상 업체

업 체 명	대표자	공급개시일	소 재 지	공 급 시·군
3개사	-	-	-	15개 시·군
경남에너지(주)	정세진	98. 1. 15	창원시 성산구	창원,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고성, 창녕
(주)경동도시가스	송재호	98. 12.30	양산시 신기로	양산
(주)지에스이	유석형	'00. 7. 1	사천시 구암 두문로	진주, 사천, 함양 거창, 하동

3) 공급비용 조정사유 및 절차

- ▶ 공급설비, 공급물량, 공급지역, 영업비용 등 공급 여건 변화
- ▶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공급비용은 연1회 산정토록 규정(매년 7월 요금부터 적용)

4) 공급비용 산정방법

- ▶ 도시가스 제조, 공급, 판매, 일반관리 등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인 총괄 원가에 연간 예상판매 열량을 나눈 금액

$$* \text{공급비용} = \frac{\text{도시가스사 총괄원가}}{\text{추정공급열량(전년도)}}$$

5) 공급비용 조정 절차

- ▶ 산정자료 제출(도시가스 3사, 3월 말) → 공급비용 산정 용역(4~5월) → 심의(경상남도 소비자실무(정책)위원회, 6월) → 승인(당해년도 6월 말)

3. 추진 상황

- '16. 3. 31 :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신청(3개사)
- '16. 4. 6~5.20 :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회계법인)
- '16. 5. 23~ 24 : 내부 검토 및 결재
- '16. 6. 10 : 소비자정책 실무위원회 심의
- '16. 6. 24 : 소비자정책 위원회 심의
- '16. 7. 1 : 조정된 공급비용 적용
 - ▶ 경상남도 소비자정책 실무위원회 구성: 당연직, 위촉직
 - ▶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소비자 활동가 4명으로 구성, 그 중 1명은 소비자정책 실무위원장(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파견)을 맡음
 - ▶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총 25명(당연직 6명, 위촉직 19명)
 - ▶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단체 실무대표 7명, 타 소비자단체 1명으로 구성(초창기 구성-경남 협 소속단체에서 추천하는 10명 위원 구성)

4. 경남도 도시가스 배관투자재원

- 1) 도시가스 보급률: 64.0%('14)→ 69.3%('16)→ 74.1%('19)
- 2) 2015년~2019년까지 배관투자 재원 투입시 보급률 약 4.7% 상승
- 3) 배관투자 재원은 보급확대 계획에 따라 1차('05~'10년), 2차('10~'15년) 3차('15~'20년)로 조성하여 보급확대에 활용
- 4) 보급률 상승효과에 더해 미공급, 소외지역 보급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

5. 도시가스 공급동향

- 1) 도시가스 보급 확대계획에 따라 공급배관 설치비 증가
 - 총 627억원(경남 에너지 395, 경동 76, 지에스이 156)
- 2) 민원 해소를 위한 경제성 미달지역 및 외곽지역에 투자: 317억원
 - 창원, 김해, 거제, 통영, 밀양, 함안, 고성, 창녕, 의령지역: 222억원
 - 양산 : 27억원
 - 진주, 사천, 하동, 거창, 함양 : 68억원
- 3) 단독주택 및 외곽지역 확대에 수용가 수 및 배관연장 증가로 고정경비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판매량 감소
- 4) 공급배관 투자 대비 판매량 감소로 공급배관 효율성 저하
 - 판매량/배관길이(동일배관에서 판매량이 많은 경우 효율 증가)

6. 요금산정의 원리

- 1) 공급비용의 산정방식: 적정보수주의 방식 적용
 - ▶ 총괄원가를 요금 총수입액으로 하며 요금의 단가는 요금 수입액을 판매량으로 나누어 결정하는 방식
- 2) 적정원가의 산정방식
 - ▶ 적정원가에는 도시가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만 포함되며, 사업자의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 하에서 소요되는 원가만 포함함.
- 3) 적정투자보수의 산정방식
 - ▶ 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하며 이는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함.
- 4) 시, 도지사는 사업의 여건 등을 감안, 배관설비의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설비 이용효율 제고를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총괄원가 외에도 별도의 투자채원을 가산할 수 있음.

7. 경상남도 공급비용 산정의 특징

- 1) 보급률과 배관효율
 - ▶ 전국 평균에 비하여 도시가스 보급률과 배관효율이 낮은 특성
공급비용의 상승요인이 된다.

구 분	보 급 율	배관효율(천MJ/m)
경남에너지	67.3%	19.70
경동가스	82.0%	21.12
지에스이	55.5%	15.79
전국평균	80.8%	22.58

2) 산업체 물량의 편중 현상

- ▶ 타시도에 비하여 산업체 물량에 편중된 특성
- ▶ 이는 공급비용의 수용가별 배분에서 산업체 물량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됨.

(단위: 천M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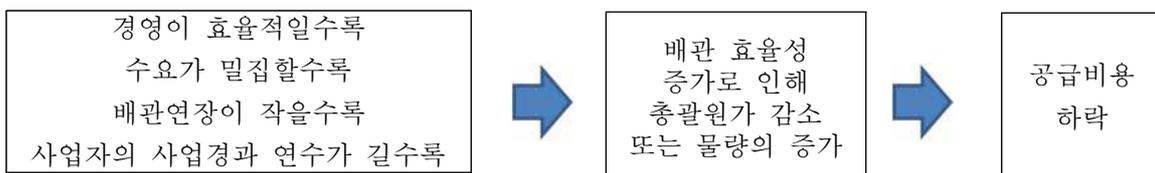
구 분	2016년		
	총공급물량	산업용 공급물량	산업용 공급비율
경남에너지	39,216,570	18,387,793	46.9%
경동가스	7,621,133	4,753,307	62.4%
지에스이	6,304,028	1,668,755	26.5%
전국평균	931,230,811	319,553,869	34.3%

3) 물량정산효과

- ▶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5조의 2규정에 의거 추정판매물량과 실제 판매물량간의 차이가 $\pm 3\%$ 를 초과 할 경우 정산해야 함.

4) 도시가스 소매용 공급비용의 차이원인

- ▶ 총괄원가의 차이- 시도별 도시가스 회사의 인건비, 감가상각비, 배관연장 공사비 등의 요금기저 과다계상 등으로 원가차이가 남.
- ▶ 판매열량의 차이- 지역별 수요 밀집도와 산업용의 비중, 사업자의 사업경과 연수, 지역별 특성에 따른 판매열량의 차이가 남.



- ▶ 즉,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도시가스 회사의 경영효율성에 따라 공급비용이 결정되지만 시도별로 수요밀집도, 산업용의 비중, 사업자의 사업경과 연수,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공급비용의 차이가 발생함.
- ▶ 수요밀집도와 배관효율 등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에 미치는 영향의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임.

8.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진행과 역할

- ▶ 회계법인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 1차 소비자정책 실무위원회 심의
 - 2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실무위원회 심의후 10일~15일 개최)
- ▶ 용역을 맡은 한울 회계법인의 담당회계사의 공급비용 산정(안) 설명과 질의

① 공급비용 추정근거	인건비 증가율, 기타경비 증가율, 공급설비투자금액, 판매량 차이 정산금액, 적정원가정산금액, 투자보수율 가산
② 공급비용 계산서	적정원가, 요금기저, 투자보수율, 투자보수, 총 공급비용, 사회적 배려 대상, 공급비용 조정금액
③ 공급비용 용도별 산정	월 기본요금, 주택용, 업무난방(영업용1,2), 냉난방공조용(산업용1,2,3,4), 열병합용, 지역난방, 수송용, 미군용, 연료전지용
④ 적정원가 명세서	영업비용(인건비, 감가상각비, 공급설비감가상각비,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 영업외수익, 법인세 비용, 판매열량 정산금액, 적정원가 정산금액

- ▶ 용역결과서는 전문적인 자료이기에 전체를 이해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부분을 질의- 배관투자 보수율, 사회적 배려 대상 지원(에너지복지 대상), 공급비용 산정방법 변경사항 등
- ▶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충분한 객관적인 설명이 안 될 경우는 자료 준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다시 개최 함.

《 최근 5년간 평균 공급비용 》

(단위: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공급비용	투자재원	계	공급비용	투자재원	계	공급비용	투자재원
경남 에너지(주)	98.45	93.45	5.0	97.64	92.64	5.0	98.91	93.91	5.0
(주) 경동도시가스	83.03	78.03	5.0	80.53	75.53	5.0	79.81	74.81	5.0
(주) 지에스이	128.0	128.0	0	124.96	124.96	0	118.67	118.67	0

구분	2014년			2015년		
	계	공급비용	투자재원	계	공급비용	투자재원
경남 에너지(주)	100.93	95.93	5.0	103.33	98.33	5.0
(주) 경동도시가스	81.54	76.54	5.0	84.61	79.61	5.0
(주) 지에스이	120. 69	120.69	0	125.66	125.66	0

《 2017년 용역결과 및 경남도 조정(안) 》

(단위: 원/MJ)

업체명	현재 공급 비용	회사 제시		회계법인 산정 결과				경남도 조정안	
		공급 비용	증 감	1안		2안		공급 비용	증감
				공급 비용	증감	공급 비용	증감		
경남 에너지	2.2851	2.7192	0.4341 (19.0%)	2.2737	-0.0114(- 0.5%)	2.2676	-0.0175 (-0.77%)	2.2627	-0.0224 (-0.98%)
경동 도시가스	1.8502	1.9730	0.1228 (6.64%)	1.8784	0.0282 (1.52%)	1.8716	0.0214 (1.16%)	1.8502	- (0%)
지에스이	2.9202	3.1539	0.2337 (8.00%)	2.9697	0.0495 (1.70%)	2.9596	0.0394 (1.35%)	2.9202	- (0%)

9. 제안사항

- ▶ 도시가스 요금 산정요인은 지자체가 결정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스 도매요금(가스공사원료비-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의 83.5% 결정 요인이 도시가스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 배관투자보수율이 도시가스 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관투자 재원의 국고 지원이 필요함- 도시가스 요금의 국고 수입의 비율이 상대적 높음(전기 경우- 설비투자비용을 한국전력이 부담하고 있음)
- ▶ 배관공사시 상하수도 배관 등 주변공사와 병행하여 포장비 절감 되도록 합리적 연관공사망의 공동 진행 의무화